

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,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2회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. 7. 11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



1. 건 명 :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
2.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 : 2017. 7. 11. ~ 2017. 7. 25.(15일간)
5. 문의사항 :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최승훈(☎ 031-560-5821)
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, 2층(인창동, 태영빌딩)